### 2023학년도 편입생 학점 인정 안내

### 1. 학점인정 신청 절차

### 가. 학생 → 학과

- 제출서류: 2023학년도 일반(학사)편입생 학점 인정 신청서(붙임2)
- 제출방법: 학생이 친필 서명한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, 개강 이후 원본 제출
- 제출기한. 3월 2일(목) 14시 까지
- ※ 학생이 신청서를 작성한 뒤 반드시 학과 지도 후 제출

### 나. 학과 → 교육혁신처

- 제출서류: 2023학년도 일반(학사)편입생 학점 인정 신청서(붙임2) 및 성적증명서
- ※ 입학홍보센터에서 학과로 편입생 관련서류 송부 예정
- 학과에서는 입학홍보센터에서 받은 서류를 1차 검토 ,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2차 검토
- 제출방법: 학과 교수회의 심의 후 서류를 취합하여 원본 제출
- 제출기한. 3월 6일(월) 18시 까지
- **다. 심의결과(교육혁신처 → 학과):** 3월 15일(수) 안내 예정

### 2. 작성방법

- 가. 본교 인정 교과목이 전공일 경우: 교과 구분, 전적 대학 취득 교과목, 취득학점 및 본교 교과구분, 본교 인정 교과목, 인정학점 작성
  - 전적대학 취득학점(ex. 2학점)이 본교 인정 교과목 인정학점(ex. 3학점)보다 적을 경우 '전공'으로 인정 불가, '일반선택'으로 신청 가능)
  - 본교 해당 학과 교육과정(2022학년도 기준)에 개설된 과목만 인정 가능
- 나. 본교 인정 교과목이 교양 / 일반선택일 경우: 교과구분, 전적 대학 취득 교과목, 취득학점 및 본교 교과구분, 인정학점 작성

#### 3. 유의사항

- 가. 전공 학점인정은 과목을 표기하여 인정됩니다.
- 나. 교양 및 일반선택 학점인정은 일괄 인정됩니다. (기입예시-1,-2 참조, 과목 미표기)
  - 예시) 일반: 00 학점 일괄인정 / 교양: 00 학점 일괄 인정
- 다. 학기당 20학점까지 인정 가능하며, 총 인정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(40학점까지 인정 가능)
- 라. 2021학년도 졸업학점 축소(학사학위)는 <u>2022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</u>, 2022학년도 졸업학점 축소 (전문학사)는 2023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됩니다.
- 마. 편입생의 교양학점인정 신청은 "편입생 학점인정 신청절차"를 따라야 합니다.
  - ※ "2023학년도 교양과목 학점인정 신청 안내"는 신입생 및 재학생만 해당됨

## 일반(학사) 편입생 학점 인정 신청서

	편입학	라				학번		명			
신청인	편입		생년월일			출신학과	-				
7 7		<u>학년</u> 신청현황									
교과 구분			<sup>련</sup> 왕 취득	7 7		인	정현황 _ 인정				
ㅜ 군 (전공/교양)	전적대학 취득 교과목			교과 구분	본고	본교 인정 교과목		인정 여부	비고		
(20) 0)	117		70	1 =			' 학점				
				<u> </u>							
	<u>ر</u>	청학	점				심의결	라			
전공						전공					
교양						교양					
일반선택					ę	<u> </u> 반선택					
총 인정학	점				총	인정학점					
본인	으 호	<b>각년도</b>	. 제 학기	우리 대학	학교의	편입학 전형	에 합격한	자로서	· 학칙, 동		
시행세칙 및	관련규	정에	따라 위와	같이 전적	덕대학의	이수학점C	에 대한 학	점인정	<u>o</u>		
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	
			2	0 년	월	일					
			신 청	인		(인)					
학과장	학과장		(인)		<u> </u>	원		(인)			
교원		(인)		<u> </u>	원		(인)				
※ 붙임 :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											

- \* '일반선택'으로 인정할 경우는 본교 인정 교과목명을 입력하지 않습니다.
- \* 명암이 들어간 부분은 교육혁신처(담당자)에서 기재합니다.

# 〈기입예시-1〉

[별지 1호서식]

\*번호순 기입 일반(학사) 편입생 학점 인정 신청서

	신청인	편입학과 편입 학년	생년·		신청인	학번 <b>정보</b>	<b>기입.</b> 출신학	과	성	명		
	교과	신청				항						
П	<del> </del>	전적대학 취득 교과·		취득 학점	교과 구분	본고	본교 인정 교과목		인정 인정 학점 여부		비고	
	2. 전적대학	전공 교과목명회	과 학점 기	점 기입. 4. 본 <b>교</b>			고 전공 교과목명과 학점 기					
	在平置广	거덕조직론		3	在是	7=	건 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		3			
										*	기입금지	
	3. 전적대학 전 (교양 등 전공	!공 외 교과목명 <u>외 교과목 선</u> 택	3과 학점   기입]	기입	5 1	. 본교 i 1과목명	교양 또는 일 과 학점 기업	반선택 김.				
	正是	河町里		3	卫厅				3			
	正に位せ	午号		2	望此位时							
						※기입금지						
Ц						· 일반선박 본교 인정	• 일반선택으로 인정할 경우, 본교 인정교과목명을 입력하지 않습니다.					
		신청호	<sup>} 점</sup> 6.인	정학점	덕 기입.			수	심의결3	라		
	전공	3	[전공	학점	합산 값)		전공					
				(교양 학점 합산 값)			교양	<b>※</b> J	미입금	지		
					합산 값) ·선택=값)		일반선택  인정학점					
ŀ		Ц							형에 호	· 간견하	자로서 하치	
	본인은 ( ) 학년도 제 ( ) 학기 우리 대학교의 편입학 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학칙, 동 시행세칙 및 관련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절대학의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을											
	신성야오니 증언야여 주시기 마답니다.											
			)UU 년 (	0 월 00 일 신 청 인								
١	학과장	교일				<u>(인)</u> (인)						
	교원		(인 (인		수회의	심의	후 작성			(인)		
	※ 붙임: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											

<sup>\*</sup> 명암이 들어간 부분은 교육혁신처(담당자)에서 기재합니다.

# 〈기입예시-2〉

[별지 1호서식]

## 일반(학사) 편입생 학점 인정 신청서

	편입학	라		경영과			191101.	1	성대	명	홍길동	
신청인	편입 학년	2	생년월일		2000.	8.4.	4. 출신학		00대학교 2		' 경영학부	
교과	신청현학			황			인정현황					
구분 전적대학 (전공/교양 등) 취득 교과목		-	취득 교과 학점 구분		본고	본교 인정 교과목		인정 학점	인정 여부	비고		
전필	경영조직론			3	전공	78	경영조직이론		3			
전필	인사	인사관리론 .		3	전공	Ó	인사관리개론		3			
전필	생산관리			3	전공		생산관리		3			
전필	경영정보학		7	3	전공		MIS		3			
교필	경제학개론		<u> </u>	3	亚邻				3			
교선	노동법			3	亚学				3			
교선	건축학개론		<u> </u>	2	일반선틱	4			2			
전필	경영전략			2	일반선틱	#			2			
전선	회계학			2	일반선틱	7			2			
	্	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점				심의결과					
전공		12					전공					
교 양 일반선택	교양		6 6			0	교양  일반선택					
발반신역 총 인정학점		0 				총 인정학점						
		하니크	C 7		ו [ב 0 לכ			저허진	] 하건	하자	크 서 하차	
본인은 <i>2020</i> 학년도 제 <i>1</i> 학기 우리 대학교의 편입학 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학칙, 동 시행세칙 및 관련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전적대학의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을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		
<i>2020</i> 년 <i>2</i> 월 <i>22</i> 일												
									동 (인) <i>홍길동</i>			
학과장			(	인)		117	교원			(인)		

\* '일반선택'으로 인정할 경우는 본교 인정 교과목명을 입력하지 않습니다.

교원

(인)

\* 명암이 들어간 부분은 교육혁신처(담당자)에서 기재합니다.

(인)

※ 붙임 :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

교원

## 편입생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지침

제정 2019. 03. 01. 개정 2020. 07. 15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부천대학교 학칙 제60조, 학사규정 제19조에 명시한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점인정) ①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학기당 2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총 인정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- ② 전적대학의 성적은 이수구분에 따라 교양, 전공, 일반선택으로 각각 인정한다.
- ③ 전적대학에서 교양으로 취득한 성적으로 본 대학 교양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④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에 동일(유사)한 교과목에 한하여 학과의 심의에 따라 전공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⑤ 교양과 전공 이외의 학점에 대하여는 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**제3조(학점이수)** 편입학자는 제2조에서 인정한 학점이외에 학과 교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4조(학점인정절차) 학점인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편입생은 일반(학사) 편입생학점인정신청서[별지 제1호서식]를 작성하여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과에 제출
- 2. 학과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구분별 교과목 학점인정 산정
- 3.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편입생의 학점인정 사항을 최종 심의
- 4. 교육운영처는 심의 결과를 학과에 통보 <개정 2020.7.15.>

### 부칙
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
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